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훈 령
제157호 : 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관리 운영규정 2
- 고 시
제2015-7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17
제2015-8호 : 서울특별시 중구 주유소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요건 및 절차에 관한 고시 18
- 공 고
제2015-63호 : 서울특별시 중구 금고 협력사업비 공고 20
제2015-66호 :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21
제2015-74호 :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2
- 상진공영 주식회사 고시
제2015-1호 : 서소문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이전고시 27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65 / FAX.(02)3396-9024
● 구보는 수시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훈 령

● 서울특별시 중구 훈령 제157호

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관리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로 상에 설치 운영하는 거리가게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리가게를 효율적으로 정비·관리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보행자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거리가게”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하여 도로에 가변적, 일시적으로 설치한 시설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2. “도로”란 서울특별시 중구 구역 내에 있는 「도로법」상의 특별시도 및 구도(區道)를 말한다.
- 3. “운영자”란 도로점용허가(이하 “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아 거리가게를 사용·수익하는 사람을 말한다.
- 4. “도로점용허가”란 「도로법」제61조 및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등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허가한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 및 조례와의 관계) 거리가게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하여「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등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거리가게의 선정기준) 거리가게 운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사항을 적용하여(점용허가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선정하여야 한다.

- 1. 거리가게 운영자는 기존 운영자 중 중구민을 우선하여 선정하며, 미달시에는 서울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 2. 선정기준은 상가주변, 재래시장 등 지역별, 구간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 단, 위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전 구청의 실태조사 등에 따라 기존 거리가게 운영자로 인정된 대상자는 2년간 적용을 유예한다. 또한 위 1호는 제8조1항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5조(재산조회) 재산 소유액은 거리가게 운영자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조회하여 합산한 재산총액에서 금융기관의 융자금 및 사채 금액을 제외한 재산액으로 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재산소유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거리가게 설치 및 금지구역 지정) ① 거리가게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거리가게의 설치는 운영자가 설치할 것. 다만, 구청장이 거리가게 정책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거리가게를 설치하고 운영자에게 도로사용료 외 대부분료를 따로 징수할 수 있다.
2. 거리가게는 위치, 장소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점용면적을 산정·허가한 장소에 설치할 것.
3. 거리가게의 형태·색상 및 디자인 등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며, 가림막 등은 설치할 수 없음.
- ② 이외의 지역에도 거리가게 폭을 제외한 보도폭이 2.5m 이상이면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폭 만큼 더 확보가 되어야 한다.
- ③ 보행권을 침해하는 도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지구역을 지정한다.
 1. 버스정류장 양끝 3m 이내 지점
 2. 지하철 출구로부터 5m 이내 지점
 3. 횡단보도로부터 3m 이내 지점
 4. 지하도, 육교입구로부터 3m 이내 지점
 5. 보도 잔여폭 2.5m 미만 거리가게
 6. 시민불편지역 및 민원발생지역
 7.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지역 등
- ④ 교통안전 시거확보 구간, 민간의 영업에 크게 영향을 주는 구간, 민간·공공 주차장 출입구 양끝 3m 이내 지점 도로에는 거리가게를 설치할 수 없다.

제7조(거리가게의 판매품목 등) ① 거리가게에서는 액세서리, 잡화, 과일, 음반, 간단한 가열 음식 등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아래 각 호의 물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상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 물품
2. 주류
3. 주변상가와 품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품목
4. 그 밖에 구청장이 제한하는 물품이나 식품
- ② 운영자는 도로점용허가 시에 구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품목에 한하여 판매할 수 있다(단, 유사 품목은 제외한다). 또한 부득이하게 판매품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점용허가 등) ① 거리가게의 점용허가 신청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이 규정 시행 전 실태조사 등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거리가게를 운영해 왔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2. 생계가 어려운 구민으로 실태조사 및 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정책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 ② 점용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매년 재산 등 자격조건을 심사하여 1년 마다 기간을 연장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 신청대상자가 거리가게의 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허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점용허가를 받은 운영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점용허가 연장의 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연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도로점용허가 조건 및 준수사항 등을 위반할 때
2. 공익목적 등 도로점용허가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보행자의 불편해소 및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행위의 금지) ① 구청장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허가된 영업시간 미준수 및 점용장소나 면적 이외의 도로 등에 상품과 물건 등을 적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2. 허가된 사람 외에 구청의 승인 없이 제3자나 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하는 행위
 3. 허가된 품목 외의 품목을 취급하는 행위
 4. 임의로 거리가게 규격을 확장 및 변경하거나 가림막 등을 설치하는 행위
 5. 제7조에서 판매 금지한 품목을 취급하는 행위
 6. 위생 상태가 불량한 음식을 판매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경우
 7.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30일 이상 폐점하는 행위
 8. 그 밖에 본 운영규정에서 정한 의무 위반이나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
- ② 금지행위 및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위반행위 시 별표1에 의한 위반횟수별 행정처분 및 벌점을 병과하여 처분한다.

제11조(점용허가 취소) 구청장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자진하여 영업을 포기한 때
2.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양여, 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한 경우. 단, 운영자가 사망하여 그 직계가족 중 1인이 권리나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부정한 방법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이 확인된 때
4. 제10조에 따른 위반행위로 연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 제12조제10항에 따른 조치사항을 거부하는 경우
6. 제18조제2항에 해당되는 자
7. 별표1에 따른 누적벌점이 연 12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제12조(거리가게의 관리) ① 구청장은 운영자가 사망하는 등 거리가게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계가족 중 1인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도로점용허가를 승계할 수 있다. 다만, 점용허가를 승계한 자의 점용 허가기간은 전 운영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② 구청장은 허가받은 사람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계속 거리가게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거리가게 임시폐점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

여야 한다. 다만, 사전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후승인을 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운영자가 제8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연장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 처리한다.
1. 부동산 및 금융재산 조회에 대한 동의서
 2. 주택임대차 계약서
 3. 사채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서류(공증 등)
- ④ 구청장은 거리가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거리가게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구청에서 발급한 운영자 증명서를 일반시민들이 보기 쉽도록 시설물에 부착하여야 하며 운영자 증명서에는 운영자 및 보조자(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중 1인)의 사진을 첨부한다.
- ⑤ 구청장은 거리가게의 운영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관계법규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영업한 운영자에게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운영자는 본 규정에서 금지된 행위로 적발되어 사실확인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서류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구청 측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⑦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및 카드단말기 설치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⑧ 운영자는 거리가게에 부과되는 각종 도로점용료, 대부료, 전기료 등 각종 부과금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 ⑨ 주변 상인 및 주민들에게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⑩ 구청장은 시민의 보행환경 및 가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위치를 조정하는 등 운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⑪ 구청장은 거리가게 운영·관리상 필요 시 전업지원, 취업알선, 자활지원, 업종 변경 등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3조(위생 청결유지 등) 구청장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리가게판매대의 위생청결 유지의무를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1. 조리 음식물을 취급하는 운영자는 위생 및 건강검진 등에 적극 협조할 것.
2. 취급식품은 변질되거나 오물 또는 다른 물질에 따라 오염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섭취하기에 안전할 것.
3. 식품 취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식품위생법」상 질병 등으로 음식업에 종사할 수 없는 자)는 음식판매대에 종사할 수 없음.
4. 식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맨손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종이, 집게, 손가락, 일회용장갑 등의 위생용품을 사용할 것.
5. 조리음식을 판매하는 운영자는 위생모자, 위생복을 단정히 착용하고, 용모를 항상 깨끗이 할 것.
6. 거리가게 영업 개시 전·후 반경 3m 이내 청소, 제설 및 제빙작업을 실시하고, 쓰레기, 폐식용유 등은 수거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

제14조(안전관리 의무) ① 운영자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소방도로 확보 등 안전사

고 예방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가스, 전기 등을 사용함에 있어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사용상의 안전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물 철거 등) ① 운영자는 점용허가 기한이 경과된 경우나 제11조에 따라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를 지정한 기한 내에 운영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면 「도로법」제74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따른 절차와 방법으로 철거한다.

제16조(처분의 사전통지)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시정명령, 제11조에 따른 허가취소, 제15조에 따른 시설물 철거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통지 등의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상생자율협의체 구성 등) ① 구청장은 보행로 확보를 위한 거리가게 및 적치물 등에 대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정비와 관리를 목적으로 한 자율기구로서 “지역별 상생자율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 구성은 거리가게 문제의 주체로써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상가변영회 임원, 건물주, 지역문제를 이끌어 가는 지역단체장 등으로 10명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 운영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1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거리가게의 실태파악 및 거리가게 정책의 중요한 기초자료 활용을 위하여 연 1회 거리가게 전체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의 실태조사에 불응하는 거리가게 운영자는 허가조건 불이행자로 구분하여 강제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자 교육) 구청장은 거리가게 운영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거리가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점용료 등 부과·징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영자에게 점용료 및 대부료를 부과징수한다.

1. 점용료 : 「서울특별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구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산정된 금액
2. 대부료 :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금액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거리가게 위반행위 조치기준

위 반 행 위	관련 규정	위반횟수			벌점
		1회	2회	3회	
1. 허가된 점용장소 면적 이외의 도로 등에 상품과 물건 등을 적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제10조 제13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30
2. 판매대 외 제3조2호에서 정의한 도로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0일	
3. 임의로 판매대 규격을 확장 및 변경하거나 가림막 등을 설치하는 행위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4.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된 사람 외에 제3자나 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하는 행위		시정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5. 제7조에서 판매 금지한 품목을 취급하는 행위		시정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6. 판매대 종류에 반하는 물품을 취급·판매하는 행위(먹거리류, 잡화류(공산품류), 취급 품목 미준수)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0일	
7. 위생 상태가 불량한 음식을 판매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0일	
8.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30일 이상 폐점하는 행위		시정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9. 그 밖에 본 운영규정에서 정한 의무 위반이나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를 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1.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대 내에 운영자 증명서를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제13조	시정명령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5일	10
2. 위생청결 유지 등 위반		시정명령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5일	
3. 판매대 벽면 등 외부에 승인받지 아니한 포스터, 현수막 등 광고물을 게시하는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5일	
4. 판매대 관리상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배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5. 기타 「판매대 관리 등 운영자의 의무」 미준수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1. 제3자에게 전매·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2조제7항에 따른 구청측 요구사항을 거부하는 경우 4. 제17조 제2항에 해당되는 자 5. 누적벌점이 연120점 이상인 경우 6. 판매대를 대부분적 및 점용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7. 행정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제11조				취소

※ 위반횟수별 행정처분 및 벌점을 병과하여 처분함

(위반횟수 및 누적 벌점은 도로점용 허가 갱신될 경우 연도와 관계없이 365일을 기준으로 함)

[별지 제1호 서식]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자우편	
	④ 연 락 처	전화		휴대전화	
⑤ 점 용 목 적		거리가게 운영		⑥ 인 접 대 지	
⑦ 점 용 장 소 (도 로 주 소)				⑧ 점 용 면 적 (가 로 x 세 로)	m × m = m ²
⑨ 점 용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p>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 제69조와 「중구 거리가게 관리 운영규정」 제8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거리가게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중구청장 귀하</p>					
근거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법 제61조제1항) ○점용허가 신청 대상자가 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점용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합니다. ○허가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전매·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등 본 규정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됩니다. 				
					⑩수수료 1,000원

[별지 제2호 서식]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자우편	
	④ 연 락 처	전화		휴대전화	
⑤ 허 가 번 호					
⑥ 연 장 허 가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⑦ 점 용 목 적		거 리 가 게 운 영	⑧ 인 접 대 지		
⑨ 점 용 장 소 (도 로 주 소)			⑩ 점 용 면 적 (가로x세로)		m x m = m ²
<p>「중구 거리가게 관리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거리가게 도로점용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 margin-top: 10px;">중구청장</p> <p style="margin-left: 20px;">귀하</p>					
근거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법 제61조제1항) ○점용허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합니다. ○허가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전매·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대리하여 영업하게 한 경우, 운영 규정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허가가 취소됩니다. 				
					⑪수수료
					1,000원

[별지 제3호 서식]

담당부서	가로환경과
책임자	○○○
담당자	○○○
연락처	3396-○○○○



도로점용허가증

제 201 - 호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거 아래의 내용과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인)

허 가 사 항

1. 점용장소	
2. 점용면적	
3. 점용목적	
4. 점용기간 ※ 운영시간	
5. 점 용 료	

허 가 조 건

1. 거리가게 영업자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영업행위를 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면적 외 도로를 점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거리가게 영업은 지정된 자가 하여야 하고 증표를 부착하며, 타인 또는 종업원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거리가게 영업시간은 원칙적으로 00:00 ~ 00:00 까지 정해진 시간으로 하며, 영업 종료 후에는 이동보 관 하여야 한다.
4. 영업 취급품목은 승인된 것에 한정하며, 상표법 등 기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점용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재산 등 자격조건을 심사 1년 마다 기간을 연장한다.
6. 도로점용허가권과 마찬가지로 거리가게 영업권은 별개로 취급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제3자에게 양도, 양여, 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도로점용허가 취소 또는 종료 시 동시 소멸한다. (단, 사망 등 직계가족 승계 시에는 전 운영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7. 거리가게 운영자는 세법 등 타 법령에서 정하는 각종 신고 및 허가사항에 대한 의무를 지며, 위반사항 통보 시 허가취소 등 책임을 진다.
8. 거리가게 운영자는 수시로 실시하는 점검결과 구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고, 계고, 과태료 부과, 허가취소 등 거리가게 질서확립 차원의 처분을 받는다.
9. 거리가게 영업자는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 및 도시미관을 해치는 물건 등을 적치해서는 안 되며, 거리가게 영업 중이나 종료 후에도 주변 청소 및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10. 소방도로 미확보로 인한 화재나 안전사고 등 발생 시 거리가게 운영자가 책임을 진다.
11. 질병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영업을 못하는 사유 발생 시는 사전에 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후 30일 이상 영업을 재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위 사항 각 호의 준수사항에 대해 연 3회 이상 위반하였을 때에는 거리가게 영업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반횟수별 행정처분 및 벌점을 병과하여 처분한다.
13. 허가받은 자는 구청장이 도로·시설물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중이라도 구청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별지 제4호 서식]

거리가게 임시폐점 신청서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자우편	
	④ 연 락 처	전화		휴대전화	
⑤ 관 리 번 호				⑥ 폐 점 사 유	
⑦ 폐 점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p>「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관리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리가게 임시폐점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중구청장 귀하</p>					
근거법규	<p>○ 운영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리가게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관리 운영규정 제12조)</p>				
유의사항	<p>○ 신청 시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증빙자료 첨부</p> <p>○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30일 이상 폐점하는 등 규정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행정처분 및 벌점(30점)을 부과함.</p>				
					⑧수수료
					없 음

[별지 제5호 서식]

중구 거리가게 관리대장

운영자 정보					
관 리 번 호	No.			운영자 사진	운영보조자 사진
운 영 자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주 소					
운 영 보 조 자	성명 : (생년월일 : , 관계 :)				
	주소 :				

시설정보				
설 치 일 자	. . .	제 작 사	(☎)	
인 접 지 주 소				
점 용 지 주 소				
점 용 면 적	m ² (가로 m × 세로 m)	계약전력	kw 일반용전력(갑)	
취 급 품 목				

거리가게 사진				
--------------------	--	--	--	--

참고사항				
-------------	--	--	--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 단속과 재영업의 악순환 반복에 따른 제도권 관리 필요성
- 실명제를 통한 체계적 관리로 무분별한 거리가게 난립 방지
- 거리가게 관리 운영에 있어 원칙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 정비·관리
- 안정적인 거리가게 영업으로 상생의 길 도모 및 도로의 공공성 회복

□ 주요내용

- 중구 거리가게 관리 운영규정에 관한 목적(안 제1조)
 - 거리가게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리가게를 효율적으로 정비·관리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보행자 편의 도모
- 거리가게 선정기준(안 제4조)
 - 거리가게 운영자는 기존 운영자 중 중구민 우선 선정, 미달시 서울시 거주자 대상
 - 재산소유액은 2억원 이하로 하고, 재래시장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단, 기존 거리가게 운영자로 인정된 대상자는 2년간 적용 유예
- 거리가게 설치 및 금지구역 지정(안 제6조)
 - 거리가게는 위치, 장소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점용면적을 산정·허가한 장소에 설치
 - 금지구역은 버스정류장 3m 이내, 지하철출구 5m 이내, 보도 잔여폭 2.5m 미만
- 점용허가 등(안 제8조)
 - 이 규정 시행 전 실태조사 등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거리가게를 운영해 왔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 점용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매년 재산 등 자격조건을 심사, 1년 마다 기간 연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위의 금지 (안 제10조)

- 허가된 영업시간 미준수 및 점용장소나 면적 이외의 도로 등에 상품과 물건 등적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 허가된 사람 외에 구청의 승인 없이 제3자나 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하는 행위
- 허가된 품목 외의 품목, 법령상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 물품을 취급하는 행위
-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30일 이상 폐점하는 행위

○안전관리의무 (안 제14조)

- 거리가게 운영자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소방도로 확보 등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운영자는 가스, 전기 등을 사용함에 있어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사용상의 안전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7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구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23길 5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서울특별시 중구 향학동 2164-1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23길 5	2010.06.30.	난계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149-41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7길 23-9	2010.06.30.	중림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1~5)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01. 2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8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별표2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요건(제15조 및 제36조제2항관련)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주유소·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요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 26.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주유소·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요건 및 절차에 관한 고시

1. 등록절차

주유소·석유대체연료주유소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출서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 또는 별지 제32호 서식)를 구비하여 중구청 민원여권과에 접수하여야 한다.

2. 등록요건

가. 자격기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이어야 한다.

나. 지역제한

(1) 주유소·석유대체연료주유소는 다음 시설등과 주유소의 방화벽 또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의 직선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가) 공동주택, 의료시설(약국 제외), 경로당, 어린이놀이터로부터 25미터 이상
- (나) 유치원, 어린이집으로부터 50미터 이상

(2)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주택법」 등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다. 시설기준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36조 제2항 [별표 2]에 의한 주유소 등록요건 또는 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시설 : 1개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상 설치하고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라. 취급유종 : 휘발유·등유·경유, 바이오혼합연료유·알코올혼합연료유·석탄액화연료유

3. 제출서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및 제40조제3항에 규정된 서류

4. 등록신청 처리

제출서류가 완비되면 관련공부 및 현장 확인과 관계기관(부서) 사전협의를 거쳐 처리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 전에 등록된 주유소는 이 고시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63호

서울특별시 중구 금고 협력사업비 공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호) 및 「서울특별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13조 제3호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구 금고 협력사업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 28.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서울특별시 중구 금고 협력사업비 내역
 - 출 연 기 관 : (주) 우리은행
 - 출연기간 (약정기간) : 2015. 1. 1. ~ 2018. 12. 31.(4년)
 - 협력사업비 (출연금) : 1,31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1,310	335	325	325	325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66호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제218회 중구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 28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가. 구의회 부의 안건

구 분	부 의 안 건 명	주관부서 (연락처)
조 례 안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체육과 (3396-4683)
	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 안전조례 제정안	여성가족과 (3396-5412)

나. 기 타

- 상세한 사항은 주관부서 또는 기획예산과 의회법제담당(☎3396-49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74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팀장이하 업무담당자까지 사무인계인수 대상에 명시함으로써 담당자 변경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인계인수를 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무인계인수 대상자를 팀장이하 업무담당자까지 확대

- 제2조 제1항 제3호 신설

기존	변경안
팀장이하 업무담당자 규정 없음	팀장이하 업무담당자 명문화

- 팀장이하 업무담당자를 명문화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사무인계인수 도모

- 팀장이하 업무담당자의 사무인계인수 내용, 방식, 보존 및 관리 등 추가

-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1조 개정

기존	변경안
“별표”의 사항 인계인수	“별표”에 준한 사항 인계인수
“별지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 작성	“별지서식”에 준한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 작성
“날인”에 의한 종이문서를 통한 인계인수 및 보관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한 ‘결재’에 의한 전자적 인계인수 및 보관

- 팀장이하 업무담당자의 사무인계인수의 신속성, 효율성, 탄력성을 확보
- 기존 담당관 또는 과장이상과는 달리 사무인계인수의 내용, 방식, 보존, 관리 등 관련 내용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인계인수 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 문의전화 : 3396-4503, FAX : 3396-8601, 메일 : agheha@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구분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소속의 팀장이하 업무담당자(이하 “팀장이하 업무담당자”라 한다)

제3조 제1항 단서 괄호 중

“소속기관의장 및 보조기관의”를 “소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팀장이하 업무담당자의”로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중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를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으며 팀장이하 업무담당자는 “별표”에 준한 인계할 사항을 “별지서식”에 준한 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한 결재 등 방식을 달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1부는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를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1부는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하며 팀장이하 업무담당자는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형태의 보관 등 방법을 달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 제2항 중 “직원”을 “팀장이하 업무담당자”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상진공영 주식회사 고시 제2015-1호

서소문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이전고시

1.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1-54호(2011. 8. 3)로 사업시행인가되어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 2014-79호(2014. 9. 24)로 공사완료 고시된 「서소문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 규정의 관리처분계획 수립내용에 따라 분양대상자에게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소유권 이전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상진공영 주식회사 사무소(☎ 02-752-661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월 28일

상진공영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대식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서소문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정비사업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75번지 외 10필지

(확정지번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136번지 외 2필지)

다. 정비사업의 시행면적 : 2,561.3㎡ (대지 : 1,990.0㎡, 정비기반시설 : 571.3㎡)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상진공영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대식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0

마.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1. 10. 12. (최초) / 2015. 1. 19 (변경)

바. 공사완료 고시일 : 2014. 9. 24.

사. 이전고시 내역

○ 사업시행면적(㎡)

총 전			확 정		
대지면적		1,993.7	대지면적		1,990.0
정비기반 시설면적	도 로	600.4	정비기반 시설면적	도 로	571.3
	소 계	600.4		소 계	571.3
계		2,594.1	계		2,561.3

○ 건축시설의 종류 및 규모

- 용도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 높이(층수) : 높이 95.05m(지상20층/지하6층)
- 건축면적 : 1,190.24㎡
- 건축연면적 : 28,318.85㎡ (지상층 : 19,882.94㎡, 지하층 : 8,435.91㎡)
(업무시설 : 19,326.88㎡, 근린생활시설 : 8,991.97㎡)

※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대상자별 세부내역(이전고시 대상면적) : 별첨

○ 토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대상자 : 상진공영 주식회사

- 토지

순번	확정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비고
1	서소문동 136	대	1,990.0	상진공영(주)	대지
2	서소문동 136-1	도	216.0	서울특별시	무상귀속 공공용지
3	서소문동 137	도	355.3	서울시 중구	무상귀속 공공용지
계			2,561.3		※확정측량결과 반영

- 건축시설

구분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비고
계	19,326.88	8,991.97	
토지등 소유자	7,172.96	8,991.97	
일반공급	12,153.92	-	
보류시설	-	-	

- 이전 설정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건수 : 해당사항없음

아. 관련서류 열람장소 : 사업시행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02-752-6610)